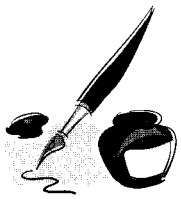

『최근의 직업성 질환』기고를 마치며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 김 규 상

『최근의 직업성 질환』이라는 제목으로 산업보건지 1999년 8월호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의 강성규 소장이 기고한 「최근 문제시되는 직업성 질환(1)」을 시작으로 2009년 3월호의 김규상 연구위원의 「악성 중피종」까지 지난 10년 동안 총 108호를 게재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직업성 질환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업병 심의 의뢰(역학조사)된 사례가 주를 이루나 그 외에도 노동부로부터 의뢰된 역학조사 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공단 자체 선정 역학조사도 다루었다. 여러 직업성 질환을 소개한 저자로 직업병연구센터의 강성규(현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김규상, 김은아, 최병순(직업성 폐질환연구소장), 안연순(동국의대 교수), 김대성, 고동희, 이혜은, 김건형 등 다수가 참여하였다.

다음 〈표 1〉은 지난 10년 동안 실린 「최근의 직업성 질환」 목록으로 산업보건지에 실린 순서대로 연도, 월, 쪽수, 제목, 질병의 계통별 분류 및 질병명을 정리한 자료이다.

이 글은 첫째로 업무상질병과 역학조사에 대한 개괄적 소개, 둘째로 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에서 그 동안 수행해 온 역학조사의 수행 과정과 수행실적 및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셋째로 사례의 업무관련성 판단의 준거에 대해 고찰하며 최근의 직업성 질환의 기고를 마치고자 한다.

1. 업무상질병과 역학조사

직업병이란 어떠한 특정한 직업 또는 작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직업병 중에는 작업관련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진폐증, 소음성 난청, 납중독 등은 질병 자체만으로 작업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암, 천식, 피부

염 등은 질병만으로 작업관련성을 알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작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작업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

작업(직업) 관련성 질병은 일반적인 질병과 직업병 사이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작업(직업)과 관련을 갖는 경우로, 일반적인 특징이 임상 혹은 병리적 발현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환과 구분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요인들도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질병이 현시화되는 과정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증상 기간이 존재하며,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의 정도(강도, 수준)는 질병 발현의 강력한 예측인자이며, 유해물질에 노출되더라도 나타나는 반응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다.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한 질병을 말한다. 업무상 질병의 사전적 정의는 '업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직업병과 다를 것이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에서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은 최초에는 직업병만을 규정하였으나 사회보장적 개념을 적용하면서 점차 그 범위가 넓어져 사실상 업무와 무관한 질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78조), 그 업무상 질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에 제1호부터 제38호까지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질병에 이환되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 종사기간 ·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며,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 기능적 관련성과 부상의 원인 ·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며,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표 1〉 산업보건지에 게재한 「최근의 직업성 질환」 목록

순서	연도	월	쪽수	제목	질병분류	질병
1	1999	8	26-30	최근 문제시되는 직업성 질환(1)		
2	1999	9	6-10	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직업병의 현황과 문제점		
3	1999	10	4-12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호흡기질환	악성중피종/폐암
4	1999	11	4-12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2	호흡기질환	악성중피종/폐암
5	1999	12	2-14	직업성 폐암 2	호흡기질환	폐암/비강암
6	2000	1	26-37	직업성 천식	호흡기질환	천식
7	2000	2	17-28	중금속 중독	신경계질환	카드뮴 중독/파킨슨증후군/망간 중독/ 구리 중독
8	2000	3	5-12	직업성 독성감염	소화기계질환	독성간염
9	2000	4	5-13	직업성 신경질환(I)	신경계질환	탈수초성질환(톨루엔)/만성독성 뇌장애/ 중추 및 말초신경장해(아세토나이트릴)/말초신경염 (아크릴아미드)
10	2000	5	4-14	직업성 신경질환(II)	신경계질환	갈란바레증후군/안구운동신경마비(삼산화염화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11	2000	6	2-12	직업성 조혈기계질환(1)	조혈계질환	급성골수성 백혈병
12	2000	7	4-15	직업성 조혈기계질환(2)	조혈계질환	골수이형성증후군/다발성골수종/재생 불량성 빈혈/급성골수성백혈병
13	2000	8	32-43	직업성 신장질환	비뇨기계질환	신장질환(이황화탄소중독)/방광암(염색공) /신장장해(카드뮴)/만성신부전(유리규산, 복합유기용제, 크롬)
14	2000	9	33-40	직업성 안질환(1)	안질환	결막염/백내장/맥락막 흑색종
15	2000	10	5-13	직업성 안질환(2)	안질환	중심망막 정맥 폐쇄/망막 박리/중심성 망막염/ 시신경염(메탄올)
16	2000	12	27-33	직업성 혈관질환	혈관질환	심부정맥정맥혈전증/하지정맥류 /하지동맥 색전증
17	2001	1	24-28	직업성 생식기질환	생식기계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건강장해
18	2001	2	2-10	피부질환	피부질환	백반증
19	2001	3	4-16	피부질환(II)	피부질환	건선/지속성 광반응증/전신소양증 /접촉피부염
20	2001	4	2-14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질환	감염성질환	폐결핵/급성뇌수막염/C형 간염 /쯔쯔가무시병 /효모균성 뇌수막염
21	2001	5	2-17	직업성 난청	이질환	돌발성 난청/혼합성 난청/비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22	2001	6	2-12	직업성 근골격계질환(1)	근골격계질환	요추간판탈출증
23	2001	7	2-11	직업성 근골격계질환(2)	근골격계질환	경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협착증 /견갑부염좌
24	2001	8	30-43	직업성 근골격계질환(3)	근골격계질환	외상후 퇴행성관절염/척골신경염/수근관증후군 /월상골연화증
25	2001	9	24-32	과로, 스트레스와 업무상질병	안질환/조혈계질환 /소화기계질환	중심성 망막동맥 폐쇄증/백혈병/간암
26	2002	1	21-33	직업병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한 업무상질병 사례(1999년도 전반기)	조혈계질환/호흡기질환 /골수이형성증	다발성골수종/폐암(진폐증)/악성중피종
27	2002	2	14-24	직업병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한 업무상질병 사례(1999년도 후반기)	호흡기질환/신경계질환 /이질환/비뇨기계질환	폐암/전신성경화증/외이도선낭포종/만성신부전 /후두암
28	2002	3	2-18	직업병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한 업무상질병 사례(2000년도 전반기)	호흡기질환/신경계질환 /감염성질환	과호산구성폐렴/악성중피종/폐암 /유기용제뇌병증/효모균성 뇌수막염
29	2002	4	4-12	직업병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한 업무상질병 사례(2000년도 후반기)	비뇨기계질환 /조혈계질환/이질환	만성신부전/급성골수성백혈병/혼합성난청 /패혈증

순서	연도	월	쪽수	제목	질병분류	질병
30	2002	5	14-21	직업병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한 업무상질병 사례 (2000년도 후반기)	소화기계질환/조혈계 질환	위암/악성림프종/급성골수성 백혈병
31	2002	6	29-39	직업병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한 업무상질병 사례 (2001년도 전반기)	조혈계질환/심장질환/ 호흡기질환	급성골수성 백혈병/방실블럭/폐암/간암
32	2002	7	37-43	업무상질병으로서의 간질환	소화기계질환	간질환
33	2002	8	2-12	직업성 폐암	호흡기질환	폐암
34	2002	9	2-11	용접공과 버스 정비공의 직업성 폐암	호흡기질환	폐암
35	2002	10	7-16	직업성 폐암(인정되지 않은 사례들)	호흡기질환	폐암
36	2002	12	6-16	직업성 천식	호흡기질환	천식
37	2003	1	20-31	직업성 신경질환	신경계질환	근이긴장증/중추 및 말초신경장해(수은중독)/ 브롬화메틸중독/황화수소중독/근위축성 측삭경화증/탈수초성 병변
38	2003	2	14-23	직업성 혈액질환	조혈계질환	골수이형성증후군/급성골수성 백혈병/재생불량성 빈혈/악성림프종/메트헤모글로빈혈증
39	2003	4	4-15	직업성 호흡기질환	호흡기질환	급성기관지염/급성호흡부전/기흉/폐기종 /급성폐혈증/폐쇄성세기관지염(BOOP)
40	2003	5	4-11	직업성 정신질환	정신질환공황장애/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양극성 장애/만성피로증후군	
41	2003	7	24-35	직업성 근골격계질환(1)	근골격계질환	완관절 관절염/극상건 파열/무지 외반증/족저 근막염/하지 정맥류
42	2003	8	4-14	직업성 근골격계질환(2)	근골격계질환	근막통증후군/경추 협착증/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요추 염좌
43	2003	9	30-39	석유화학공장 근로자의 혈액 및 림프계질환	조혈계질환	비호지킨림프종/급성골수성 백혈병
44	2003	10	17-24	석유화학공장 근로자의 혈액 및 림프계질환(II)	조혈계질환	비호지킨림프종/급성골수성 백혈병
45	2003	11	10-19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직업성 질환(I)	신경계질환/심장질환 /조혈계질환	안면신경마비/척추동맥 협착/일사병/허혈성 심질환/무혈성 괴사/혈전성 정맥염
46	2003	12	30-40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직업성 질환(II) - 비전리방사선	안질환/뇌질환 /신경계질환	망막변성/백내장/녹내장/포도막염/뇌종양 (악성핍지교종)/근위축성 측삭경화증
47	2004	1	18-27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직업성 질환(III) - 비전리방사선에 의한 조혈기계질환	조혈계질환	급성골수성 백혈병
48	2004	2	15-23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직업성 질환(IV) - 전리방사선	조혈계질환	조급성골수성 백혈병/다발성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악성림프종
49	2004	4	4-14	직업병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한 업무상질병 사례 (2002년 상반기)	호흡기질환	비인두악성림프종/폐암
50	2004	5	4-13	직업병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한 업무상질병 사례 (2002년 하반기)	근골격계질환	극상건파열/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
51	2004	6	4-16	직업병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한 업무상질병 사례 (2003년)	조혈계질환 /호흡기질환/정신질환	비호지킨스림프종/폐암/공황장애
52	2004	7	33-38	업무상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재 예방의 방향		
53	2004	8	4-12	직업병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한 업무상질병 사례 (2004년)	근골격계질환/신경계질환	경추부추간판탈출증/말초신경염
54	2004	9	4-15	직업성 천식	호흡기질환	천식
55	2004	10	4-10	직업성 호흡기질환	호흡기질환	간질성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증/만성부비동염/폐렴
56	2004	11	3-9	직업성 혈액질환(IV)	조혈계질환	급성골수성백혈병/재생불량성빈혈/급성림프성 백혈병/다발성골수종/만성골수성 백혈병

순서	연도	월	쪽수	제목	질병분류	질병
57	2004	12	4-10	직업성 혈액질환(V)	조혈계질환	급성골수성 백혈병/급성림프성 백혈병
58	2005	1	13-20	석면에 의한 질환(III)	호흡기질환	석면폐증/악성중피종/폐암
59	2005	2	4-12	석면에 의한 질환(IV)	호흡기질환	폐암/악성림프종/간질성 폐렴
60	2005	3	6-13	직업성 호흡기질환 - 기관지 확장증	호흡기질환	기관지 확장증/폐기종
61	2005	4	5-12	직업성 순환기질환	순환기질환	심방세동(할로겐 탄화수소)
62	2005	5	4-9	직업성 신경계질환 - 말초신경염	신경계질환	말초신경염(노말헥산)
63	2005	6	5-9	직업성 신경계질환 - 말초신경염	신경계질환	다발성신경염(아크릴아미드, 톨루엔)
64	2005	7	4-7	직업성 신경계질환 - 가스중독	신경계질환	메틸브로마이드중독
65	2005	8	26-31	직업성 신경계질환 - 뇌신경질환	신경계질환	안구운동 신경 마비/후각 소실
66	2005	9	4-9	직업성 신경계질환 - 농약원재료 포장 근로자의 혈관성 두통	신경계질환	혈관성 두통
67	2005	10	5-9	직업성 신경계질환 - 만성유기용제중독	신경계질환	만성유기용제중독
68	2005	11	30-37	직업성 신경계질환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신경계질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69	2005	12	4-8	직업성 신경계질환 - 도장작업자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신경계질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70	2006	1	17-24	직업성 신경계질환 - 전자부품 생산공장 근로자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신경계질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71	2006	2	4-8	직업성 신경계질환 - 선박도장 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만성유기용제 중독(만성독성뇌병증)	신경계질환	만성독성뇌병증(만성 유기용제 중독)
72	2006	3	4-7	트리클로로에틸렌중독 - 세척작업자에서 발생한 스티븐존슨증후군	피부질환	스티븐존슨증후군(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
73	2006	4	11-14	폐기물 재생처리업 근로자들에서 발생한 수은중독	신경계질환	수은중독
74	2006	5	5-7	아파트 경비작업자의 쯔쯔가무시병	감염성질환	쯔쯔가무시병
75	2006	6	5-8	폐기물 처리업 근로자의 가스 괴저	감염성질환	가스괴저(괴사성 근염)
76	2006	7	4-9	합성피혁 제조업 근로자의 독성간염에 의한 사망	소화기계질환	독성간염(DMF중독)
77	2006	8	4-8	아파트 난방용 보일러 및 발전기 운전업무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신경계질환	일산화탄소 중독(저산소성 뇌증)
78	2006	9	5-8	병원 근로자의 감염성 질환 사례	감염성질환	뇌수막염/폐결핵
79	2006	10	5-11	망간중독에 의한 파킨슨증후군 사례	신경계질환	파킨슨증후군
80	2006	11	5-7	근로자의 알권리 어디까지 와 있는가? - 방광암에 걸린 염료제조업 어느 퇴직자의 경우	비뇨기계질환	방광암
81	2006	12	5-6	정신질환의 업무관련성 - 건설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질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82	2007	1	16-18	순대제조업 근로자의 수지 괴사	피부질환	피부감염질환-수지괴사
83	2007	2	5-18	2006년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업무상질병사례(1)	호흡기질환/근골격계질환	폐암, 섬유근육동통증후군
84	2007	3	5-20	2006년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업무상질병 사례(2) - 금속가공유 취급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의 비염 집단 발생	비질환	비염
85	2007	4	5-15	2006년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업무상질병 사례(3) - 제과제빵업체 밀가루 분진 노출에 의한 천식 발생	호흡기질환	천식
86	2007	5	4-16	2006년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업무상질병 사례(4) -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	호흡기질환	천식/ARDS

순서	연도	월	쪽수	제목	질병분류	질병
87	2007	6	5-17	직업성 천식 - 천식의 업무관련성의 평가와 확진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판단	호흡기질환	천식
88	2007	7	5-14	직업성 피부질환 - 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과 리일 흑피증	피부질환	전시소양증/피부묘기증/리일흑피증
89	2007	8	5-17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 외상과염에서 작업의 인간공학적 위험과 스포츠 활동이 미치는 영향 판단	근골격계질환	외상과염
90	2007	9	5-19	진동 노출과 직업성 질환 I - 국소진동 노출과 진동증후군	근골격계질환	국소진동증후군
91	2007	10	5-18	진동 노출과 직업성 질환 II - 국소진동 노출과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외상과염/수근관증후군
92	2007	11	5-17	진동 노출과 직업성 질환 II - 전신진동과 추간판탈출증	근골격계질환	요추 추간판탈출증
93	2007	12	7-21	자동차 내장재 생산업체에서 발생한 MDI 유발 직업성 천식	호흡기질환	천식(MDI)
94	2008	1	20-25	군에서 충격소음 노출과 청신경종	암	청신경종
95	2008	2	4-12	부비동암	암	부비동암-상악동암
96	2008	3	5-13	비인강암/비강암 1	암	비인강암/비강암
97	2008	4	6-19	비인강암/비강암 2	암	비강암/모세혈관종/비인두암/비강 유두종
98	2008	5	6-13	구강암-후두암과 편도암 등	암	후두암/편도암
99	2008	6	4-12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근골격계질환	무릎의 퇴행성관절염
100	2008	7	6-20	2007년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업무상질병 사례(1)	호흡기질환	폐암, Goodpasture's syndrome, 규폐증과 폐암 등
101	2008	8	5-10	2007년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업무상질병 사례(2)	호흡기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102	2008	9	5-15	2007년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업무상질병 사례(3)	안질환	각막혼탁
103	2008	10	5-13	면분진에 의한 호흡기질환	호흡기질환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104	2008	11	5-15	직업성 정신질환	정신질환	우울증/정신분열형 장애
105	2008	12	5-15	안면신경마비	신경계질환	안면신경마비
106	2009	1	19-36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 관절변형 및 퇴행성	관절염근골격계질환	관절변형/퇴행성관절염
107	2009	2	6-21	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기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108	2009	3	4-18	악성중피종	호흡기질환	악성중피종/폐암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부터 24. 간질환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

산업현장에서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후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관련성의 승인 여부 검토에 따라 요양치료, 장해보상, 재활훈련 등을 거쳐 사회에 복귀한다〈그림 1〉.

산재청구 및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부지급을 결정하였을 때 당해 근로자는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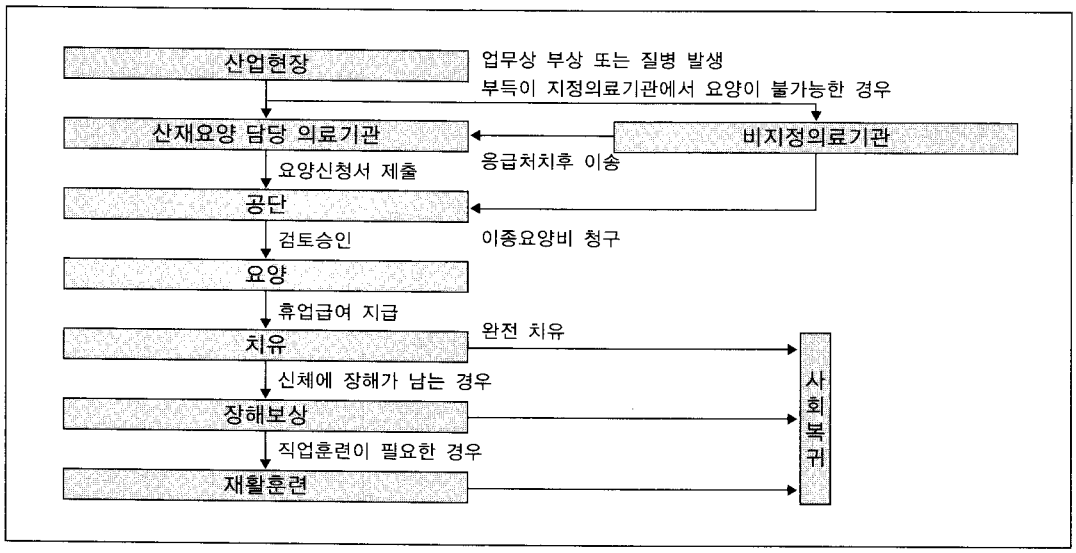

〈그림 1〉 산재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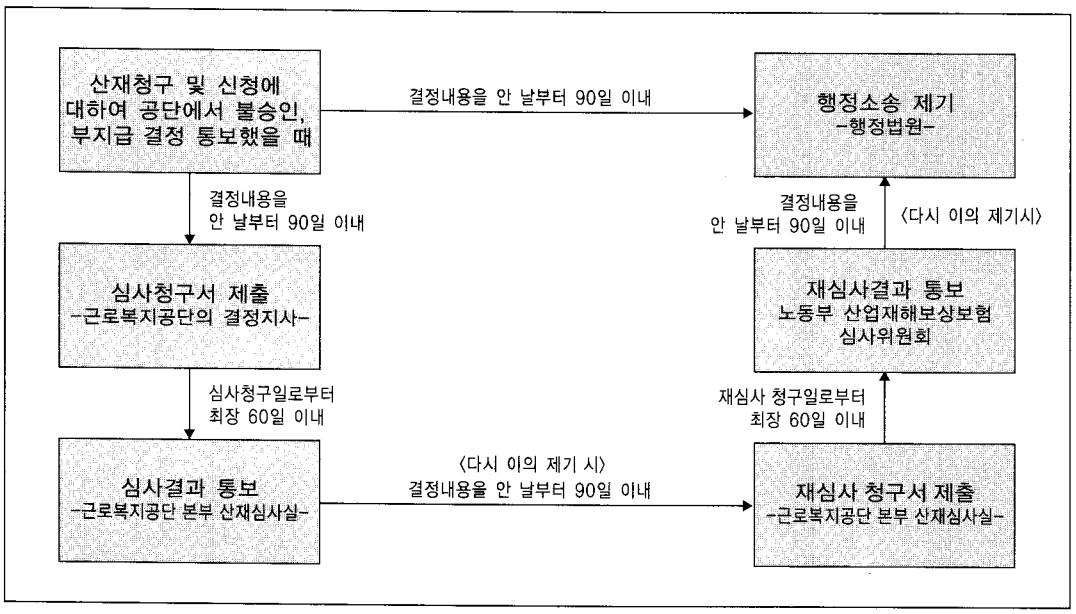

〈그림 2〉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 자문의사협의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의 2). 요양업무처리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 자문의사협의회에 심의를 의뢰하거나 산업안전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등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24조).

즉, 근로자의 기존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미친 영향력이 불명확한 경우, 유해물질의 노출정도 및 유해물질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임상증상에 관한 의학적 소견,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하여 주치의사와 자문의사 소견이 다른 경우에 자문의사협의회에 심의를 의뢰하거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야 할 대상 업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다만, 진폐증을 제외한다), 과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바 없는 새로운 질병 등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질병,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등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심의 조사결과, 업무상 요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결정한다.

「역학조사」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역학조사」).

역학조사는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 이환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대표 ·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밖에 직업성 질환의 이환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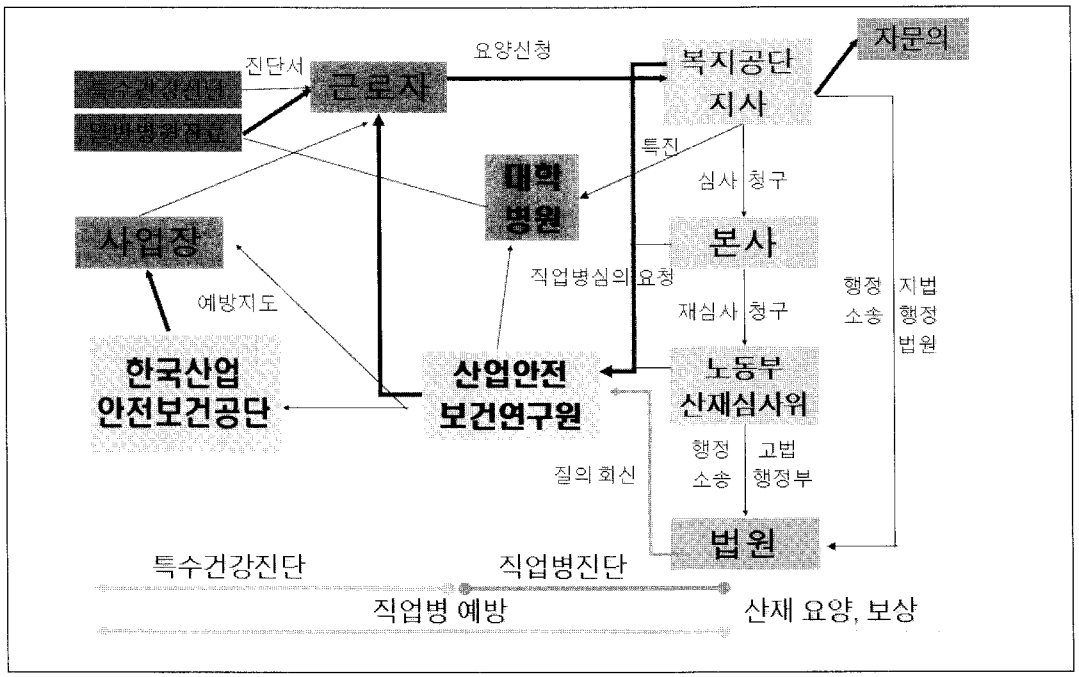

〈그림 3〉 직업병 요양 승인 과정

대하여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

2. 역학조사의 수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별 사례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가 의뢰되면,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역학조사를 수행한다.

의뢰된 질병의 위험요인(직업/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에 대한 리뷰 등 기초자료 검토 후 문헌조사를 먼저 수행하고, 근로자의 과거력, 직업력, 개인력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의뢰된 근로자 개인을 면담하고, 질병의 진단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체 진료 또는 특진을 의뢰한다. 그리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측정자료, 건강진단자료, 작업일지 및 물질구매대장 등을 검토하고, 유해물질 확인을 위해 원시료분석과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을 실시한다. 필요시에 동료 근로자에 대해 생물학적 모니터링, 건강진단 및 퇴직자 추적을 한다.

〈표 2〉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심의 요청 건 수

구분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요청(건)		82	87	77	74	99	128	132	132	128	108
심의결과	소계	51	86	77	74	99	128	132	132	128	108
	인정(건)	27	22	36	30	15	49	58	61	68	51
	불인정(건)	21	62	37	43	17	64	72	69	58	53
	반려(판정불가)	3	2	4	1	67	15	2	2	2	4
심의진행 중		31	1	0	0	-	-	-	-	-	-

이와 같은 현장조사 후 결과에 대한 토의와 심의(직업병역학조사 전문위원회와 평가위원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회신한다. 사업장 요청 역학조사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역학조사 계획과 결과 심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개별 사례와 다르고, 환자(case) 확정과 노출 평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성과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업무관련성의 판단은 조사결과 직업적 노출과 산재신청 질병의 인과관계가 51% 이상이라고 판단될 때(상당인과관계설)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결론 내린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심의요청된 역학조사는 〈표 2〉와 같다.(다음 호에 계속)